

勤勞人民黨 研究

— 創立過程과 政策을 중심으로 —

沈 之 淵*

< 目 次 >	
1. 문제제기	1) 선 언
2. 근로인민당의 창립과정	2) 강 령
1) 인민당재건위원회 조직	5. 근로인민당의 정책
2) 근로인민당준비위원회 조직	1) 통치구조
3) 근로인민당 창립	2) 제반 정책
3. 근로인민당의 조직과 구성요소	6. 맺음말
4. 근로인민당의 선언과 강령	

1. 문제제기

해방정국에서 근로인민당(이하 근민당으로 약칭)은 독특한 위상을 지닌다. 결성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의 제반과정은 한국정당사를 그대로 압축해 놓은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합당과 분당 그리고 재창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이합집산이 재현되었으며, 야당에게 가해지기 마련인 정치적 테러와 박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민족과 국가를 위해 현실을 변혁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역사를 가졌고,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으며 정국의 안정을 기하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근민당은 해방직후 권력의 공백기에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데 앞장섰던 呂運亨을 중심으로 결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된 조선인민당(이하 인민당으로 약칭)이 모체가 된 정당이다. 인민당은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해방정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지만 당시 3당합동이 추진되자 좌파와 우파로 양분되어 사회노동당(이하 사로당으로 약칭)과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으로 약칭)으로 흡수되어 당 자체는 해소되었다. 그러나 합당이 원래의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자 인민당 우파세력들이 새로운 정치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呂運亨을 구심점으로 하여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창립한 정당이 근민당이다.

근민당도 인민당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정책적인 면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로 인해 근민당은 보수진영으로부터 기피당했으면서도 진보진영의 도움은 받지 못했다. 근민당의 노선 자체가 온건한 것이었기에 진보진영으로부터 경원당한 것이다. 따라서 근민당은 좌우 양진영으로부터 이중적인 견제를 받아 세력확장을 기하기 어려웠고 이것이 후일 당세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좌우를 수렴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던 근민당의 정책과 노선은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바람직스러웠던 노선으로 분석되나, 미·소 양군의 주둔으로 이데올로기가 양극화되어 가는 현실과는 조화될 수 없었다. 민족적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했던 외세는 자국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정치세력과 제휴했고 그 밖의 세력에 대해서는 배척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근민당은 어느 한 나라에만 편향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했으면서도 근민당은 해방후 대두되었던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비롯한 제반 모순의 해결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중도적인 입장에서 민족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려고 했다. 양극화되어 가는 현실속에서 근민당의 이와 같은 노력이나 입장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말았지만 그 후 전개된 한국정치사의 흐름을 볼 때,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국의 양극화로 인해 초래

될 민족적 비극을 미리 예견하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 근민당의 정책과 노선이었기 때문이다.

해방정국에서 근민당은 이러한 위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당사적인 차원에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상의 문제와 아울러 제반 여건의 미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상당수의 관련 자료가 망실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근민당에 대한 연구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공백으로 남아있는 근민당을 그 일부분이나마 연구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끊임없는 자료발굴과 이론개발을 통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점은 시정될 것이고, 이를 통해 현대사 연구는 보다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근로인민당의 창립과정

북한에서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이하 북로당으로 약칭)이 창립되자,¹⁾ 남한의 좌익진영도 합당을 추진하게 되었다.²⁾ 그러나 3당합동의 원래의 의도였던 좌익진영의 대동단결이 실현되지 못하고 양분되는 사태가 초래되자 인민당 우파들은 인민당으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인민당은 합당을 계기로 하여 朴憲永노선을 추종하는 좌파와 呂運亨노선을 추종하는 우파로 양분되어 좌파는 남로당으로, 우파는 사로당으로 흡수되어 당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는데, 사로당노선에 불만을 느낀 인민당 우파들이 인민당을 재건하려고 인민당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한편 남로당과 대립적인 위치에서 정국을 주도하려 했던 사로당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해체를 결의하고 인민당 우파들의 움직임에 동참함

1) 북로당의 창립 과정에 대해서는 方仁厚, 「北韓 '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高麗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pp. 94-105 참조.

2) 남한에서의 좌익 3당의 합동에 대해서는 金南植, 「南勞黨研究」(돌베개, 1984), pp. 247-268 참조.

으로써 근민당이 창립되게 된다.

1) 인민당재건위원회 조직

인민당 우파들은 46년 12월 10일 인민당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후 사로당에서 탈당한 우파적인 성향의 인물을 중심으로 인민당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 3당합동으로 출현한 사로당이 계급적 편향성을 지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습적인 파쟁을 첨예화시켰기 때문에 대중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³⁾ 인민당을 재건하기 위한 운동은 사로당 간부들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점차 가속화되는데, 이는 좌우합작과 합당문제에 대해 자아비판을 했던 呂運亨을 구심점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47년 1월 8일 강원도 원주에서 요양하다가 상경한 呂運亨은 인민당 사무국장이었던 李林洙를 비롯한 측근들과 함께 인민당의 조직상황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구상에 나섰다.⁴⁾ 그는 인민당 재건문제에 대해 강원도지역은 인민당의 기반이 취약했던 곳인데 많은 군중이 인민당의 깃발 아래 모이겠다는 열성적인 부르짖음을 보았고 또 전북 전담을 위시한 각지에서 인민당의 존속을 희망하는 정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자신은 정계에 흥미를 잃었으므로 자신이 꼭 나서야 독립이 된다는 민족의 활로가 개척된다는지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나설 생각이 없다고 언명,⁵⁾ 정치활동 의사를 간접적으로 비쳤다. 그는 미소공위에서는 단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모두가 단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아울러 미소공위가 속개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에서 우익진영이 다시 반탁운동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제고립과 민족분열 그리고 독립지연을 초래하므로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⁶⁾

3) 「京鄉新聞」, 1946년 12월 12일.

4) 「民主日報」, 1947년 1월 12일.

5) 「中外新報」, 1947년 1월 12일.

6) 「獨立新報」, 1947년 1월 28일.

이처럼 정계를 은퇴했던 呂運亨이 정치문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면서 인민당 재건에 관심을 보이자 인민당 우파는 47년 1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인민당재건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인민당재건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에 張建相, 부위원장에 李萬珪를 선정하고 당수에 呂運亨의 취임을 중용하기로 하는 등 인민당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⁷⁾ 인민당재건위원회는 1월 31일 성명을 통해 독립완성과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한 소신을 실천하기 위해 종래의 인민당을 재정비 재강화하고 재출발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미소공위가 하루 빨리 속개될 것과 국내 여러 세력들의 자율적 통일을 달성해줄 것을 요망하고,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민주적 통일운동이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⁸⁾

인민당재건위원회가 구성되어 당 재건을 위한 활동에 들어가자 남로당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3당이 합동되어 남로당을 결성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없어진 인민당의 간판을 다시 내걸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배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⁹⁾

남로당의 반발에 대해 呂運亨은 인민당 재건이 민주진영에 해롭다는 주장이 있으나 문제는 인민당을 재건하려는 측에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¹⁰⁾ 혁명 세력이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히 한 곳으로 집결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그냥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남로당이 혁명세력을 모두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다.

신당의 필요성을 강조한 呂運亨은 3월 7일 趙漢用, 李貞求와 함께 영남지역으로 유세를 갔다. 첫 기착지인 대구에서 呂運亨은 개인자격으로 온 것임을 강조했으나,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¹¹⁾ 인민당 재건

7) 「民主日報」, 1947년 2월 1일.

8) 「京鄉新聞」, 1947년 2월 1일.

9) 「獨立新報」, 1947년 2월 4일.

10) 「京鄉新聞」, 1947년 2월 7일.

11) 여기서 그는 정국이 복잡한 형세에 처해있는 만큼 서로 상극을 버리고 타협적 길을 걸어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언명하고 서로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嶺南日報」, 1947년 3월 9일.

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

한편 사로당 해체파측에서 사로당을 해체한 후 呂運亨에게 인민당재건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신당 결성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자, 그는 3월 11일 인민당재건위를 해산시키고 신당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¹²⁾ 보다 광범위한 대중을 망라하여 신당으로 출발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이로써 1단계인 인민당재건위원회 조직, 2단계인 사로당 해체를 지나, 3단계인 신당 결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2) 근로인민당준비위원회 조직

신당준비위원회를 조직한 呂運亨은 신당이 출발한다는 것은 인민 속에서 인민 자신의 솟구쳐 올라오는 인민의 혁명세력이 결집되어서만 비로소 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혁명세력의 결정으로 인민의 정당이 출발한다면 대오를 같이하여 분발할 각오를 가졌다고 언명했다.¹³⁾ 그리고 민주진영의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행동에 있어 진실이 요청되며, 진실을 토대로 모든 운동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살려야 하며, 대중단체도 독자성을 살려 각자에 부과된 민주과업의 정신을 인민 각계각층에 침투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신당이 출범한다면 대중단체의 독자적 운동방침을 구체화하며 대중운동을 더 광범하게 하고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으로 약칭)도 좀 더 광범하고 대담한 처치가 있도록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준비위원회는 47년 3월 29일 사로당계에서 12명, 인민당재건위측에서 9명, 신민당 해방동맹 기타 10명으로 구성된 31명의 준비위원을 선출했고 4월 7일에는 제 1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서 등에 관할 토의를 했다. 신당은 그 노선에 있어 사로당과는 달리 남로당이나 북로당에 대해 어느 정도 타협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¹⁴⁾

12) 「東亞日報」, 1947년 3월 13일.

13) 「中外新報」, 1947년 3월 24일.

14) 「朝鮮日報」, 1947년 4월 9일.

신당준비위원회는 4월 8일에도 개최되었고 신당의 명칭도 근로인민당으로 결정되어 呂運亨 중심의 신당작업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그리하여 47년 4월 12일에는 신당준비위를 대표하여 呂運亨이 신당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위를 발표하였다.¹⁵⁾ 여기서 그는 3당합동을 계기로 혼란에 빠진 민주진영을 수습하기 위해 사로당, 인민당재건위까지 해산했는데 이는 민주진영의 강화를 위한 자기청산이며 이 청산과정을 지나자 인민의 정당한 혁명력이 앙양되어 민주진영의 재정비 강화가 요청되어 張建相 李萬珪 李如星 등 20여 동지들과 토의한 결과 신당을 발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당준비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시종일관 군중 속에서 청년 동지들을 중심으로 중앙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중앙준비위원들에 대한 정당한 교시와 지도를 위해 정치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치협의회 및 중앙준비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¹⁶⁾

정치협의회 (11명) ; 呂運亨 張建相 趙東祐 李萬珪 金恒圭 李林洙 姜應鎭 李如星 金星淑 吳錫均 李想白.

중앙준비위원 (38명) ; 呂運亨 趙漢用 徐丙寅 張現 劉秉默 崔永來 李濟晃 李貞求 丁海龍 金基鉉 金仁培 崔龍根 孫斗煥 張鐵 李殷雨 宋玄祥 崔漢儉 崔逸雲 金在浩 金基陽 李榮高 趙龍鳳 尹承鉉 安承泰 朴相胤 金漢京 成大慶 金鎭琪 金永根 柳時泳 李霞城 姜昌濟 金明鎭 申東一 高明子 尹九燮 張赫

이처럼 신당 결성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되자 남로당은 呂運亨을 중심으로 한 신당이 발족된다면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반동세력을 분쇄하는데 공동투쟁을 할 것을 확신하며 기대한다고 언명했다.¹⁷⁾ 이는 종래 배척하겠다는 태도를 바꾼 것으로, 呂運亨은 이에 대해 남로당의 기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근민당은 밑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민주적 세

15) 「獨立新報」, 1947년 4월 13일.

16) 「朝鮮日報」, 1947년 4월 13일.

17) 「獨立新報」, 1947년 4월 15일.

력을 토대로 남로당과 제휴하여 통일정부 수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¹⁸⁾ 그는 또한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는데는 3상결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함으로써 근민당의 노선도 3상결정을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민전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근민당이 발족한 후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그는 언명했다.¹⁹⁾

47년 4월 12일 중앙준비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4월 15·16일에는 영등포, 성동, 용산, 중앙, 서마, 동구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21일에는 서울시당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²⁰⁾

3) 근로인민당 창립

중앙 및 지부준비위원회를 조직하며 창당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근민당은 4월 26일에는 준비위원장 呂運亨명의로 “建國의 偉業을 完成할 것을 任務로 하고 勞動者 農民 小市民 全 勤勞人民과 愛國의 正義人士의 前衛黨으로서의 創立”²¹⁾을 선언하는 창립선언 초안을 발표했다. 呂運亨은 5월 5일 담화를 통해 일부에서 근민당 출현에 관해 모략을 하고 있으나 모두 낭설이며, 창립선언을 발표한 것은 창립대회에서 가장 정당한 선언과 강령이 채택되기 위해 대중투의에 회부한 것이라고 밝혔다.²²⁾

그리고 근민당은 일체 독선주의를 배제하고 당 내외에 집결된 순수한

18) 「中外新報」, 1947년 4월 16일.

19) 「民報」, 1947년 4월 23일.

20) 이들 준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영등포 朴一浩, 중앙구 呂運吉, 성동구 李敦泳, 서마구 尹希重, 용산구 金炳模, 동구 任東旭.

*서울시 위 원 장 張建相, 부위원장 趙東祐·李萬珪

총무부장 金星淑 부 책 呂運吉

조직부장 鄭 栢 부 책 任東旭

선전부장 李如星 부 책 盧永穆

재정부장 李萬珪

감사부장 高哲宇 부 책 徐 典

「獨立新報」, 1947년 4월 26일 및 「中外新報」, 1947년 4월 26일.

21) 「獨立新報」, 1947년 4월 27일.

22) 「民主日報」, 1947년 5월 6일.

세력의 옹은 의견은 언제든지 선언 강령에 반영할 것이므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경우 준비위원회의 진행이 빈약하여 섭섭한 감이 없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일부 지역에서는 근민당에 대한 지지가 예상보다 저조했음을 알 수 있다.²³⁾

근민당준비위는 창립대회를 1947년 5월 24일과 25일 양 일간에 갖기로 했는데²⁴⁾ 이는 5월 20일 속개되는 미소공위의 진행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근민당으로서는 미소공위의 성공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에 공위의 속개를 요청해왔었다. 그리고 공위가 재개된다는 발표가 있자, 근민당은 담화를 통해 양국 사이에 합의를 보아 공위재개가 확정된 것은 민주진영의 승리라고 확신했다.²⁵⁾ 근민당으로서는 공위가 성공되어 민주적인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를 기대하고 확신했기에 공위재개에 즈음하여 당 창립을 서둘렀던 것이다.

근민당은 지방대의원과 당원을 소집하여 창립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공위 개최중에는 일체의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 제 3 호에 따라 대의원만을 소집한 가운데 5월 24일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준비위원 38명과 대의원 238명이 참석했는데, 呂運亨은 개회사를 통해 근민당의 목적과 사명은 반동분자들의 단정수립계획과 모략을 분쇄하고 완전 자주독립을 찾는 데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²⁶⁾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만이 민주조선을 건설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시민만으로서도 조선 건설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조선의 건국은 오로지 각계각층이 한데 뭉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시집행부의 선거에서 呂運亨 白南雲 李英 張建相 李萬珪 姜應鎭 金大熙 7인이 임시의장에 추대되었으며, 25일에 속개된 대회에서는 강령과 규약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미소공위에 관한 대책은 미소공위대책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전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대의원 일

23) 「釜山新聞」, 1947년 5월 13일.

24) 「獨立新報」, 1947년 5월 14일.

25) 「朝鮮日報」, 1947년 5월 17일.

26) 「中外新報」, 1947년 5월 25일.

부의 반대가 있어 원칙적으로 가입키로 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중앙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²⁷⁾ 대회중 긴급동의로 투옥된 혁명투사들의 석방을 하지 장군에게 요청할 것, 미소공위 속개 감사 메시지를 브라운·스티코프 양 장군에게 전달할 것, 미·소·영·중 4개국 원수에게 공위재개 감사와 성공요청을 전문으로 보낼 것, 북조선 3우당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을 긴급동의로 채택했다.²⁸⁾

창립대회를 마친 근민당은 세계사적 민주주의의 발전방향과 남조선 민주운동의 특이한 현실요청에 입각하여 조선민족의 민주건국의 위업을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 근로인민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²⁹⁾ 그리고 인민을 토대로 한 민주정권으로서 인민공화정부의 수립을 기하며, 민주적 토지개혁과 계획경제를 수립한다는 등 5개 항의 정치노선을 규정했다.

3. 근로인민당의 조직과 구성요소

창립대회에서 근민당은 61명의 중앙위원과 11명의 후보중앙위원을 비롯하여 감찰위원을 선임했으며,³⁰⁾ 5월 27일에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과 각 부서에 대한 인선을 마쳤다. 이날 결정된 인선은 다음과

27) 「民報」, 1947년 5월 27일.

28) 「中外新報」, 1947년 5월 27일.

29) 「中外新報」, 1947년 5월 28일.

30) 중앙위원, 후보중앙위원 및 감찰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위원; 呂運亨 白南雲 張建相 李英 李萬珪 李如星 金星淑 李想白 鄭栢 崔益翰 文甲松 趙東祐 趙漢用 劉泰璉 韓一大 金文弘 李殷雨 愼幕 李永善 崔星煥 成大慶 李貞求 具小鉉 崔熙善 尹東明 許允九 崔漢儉 孫桔相 朴東喆 張鐵 康鎬景 白基萬 李東善 金基鉉 劉秉默 尹昇玄 丁海龍 高明于 金基隅 趙音鳳 朴泰鍊 金在弘 李廷柱 權德洙 李英俊 黃憲 咸益錄 姜鎔 鄭泰熙 申彥植 金相基 金又甲 등 61명.

후보중앙위원; 金龍吉 金漢京 黃洛周 金海祐 金一宇 洪承萬 丁南鎮 黃善鶴 申宗洙 등 11명.

중앙감찰위원회; 위원장 孫斗煥, 부위원장 姜應鎮 李林洙
위원 김진우 등 12명.

같다.³¹⁾

상임위원 ; 呂運亨 張建相 白南雲 李英 李如星 李想白 文甲松 李萬珪
鄭栢 李殷雨 외 21명.

위원장 ; 呂運亨 부위원장 ; 白南雲 李英 張建相

사무국장 ; 文甲松 차 장 ; 徐丙寅

조직국장 ; 李萬珪 차 장 ; 李殷雨

선전국장 ; 張建相 차 장 ; 韓一大

비서실장 ; 李如星 차 장 ; 趙漢用

근민당은 미소공위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당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소공위대책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³²⁾

위원장 ; 金星淑

위원 ; 李如星 李想白 趙漢用 崔星煥 高景欽 金良瑕 洪淳燁 孫斗煥
鄭栢 徐東旭 李林洙 黃啓周 崔謹愚 洪性德 許允九 趙東祐.

이처럼 근민당은 인민당 우파를 중심으로 하여, 사로당 해체시 남로당에 입당하지 않은 좌파성향의 사로당원이 참여한 일종의 좌우 연합적인 인적 구성을 보였다.³³⁾ 이처럼 복잡한 인적 구성으로 인해 창당 초기 부서편성과 정강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사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³⁴⁾ 그러나 당사자들이 이를 곧 부인했고,³⁵⁾ 근민당에서도 성명을 통해 사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미소공위사업을 방

31) 「中外新報」, 1947년 5월 28일 및 5월 30일.

32) 「中外新報」, 1947년 5월 28일.

33) 근민당의 인적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이 제시되기도 한다.

* 근민당 좌파 ; 李英 鄭栢 李殷雨 金大熙 劉泰璉 崔星煥

* 근민당 우파(呂運亨 지계) ; 呂運亨 張建相 李萬珪 李貞求 李如星 李文弘
文甲松 趙漢用 李林洙 金振宇 趙東祐

* 白南雲계 ; 朴東喆 申東一

張福成, 「朝鮮共產黨派爭史」(大陸出版社, 1949), pp. 75-76.

34) 「民報」, 1947년 5월 29일.

35) 「獨立新報」, 1947년 5월 30일.

해하려는 반동의 모략이라고 이를 비난함으로써,³⁶⁾ 일단락되는 듯이 보였다.

그렇지만 당내에 우파를 중심으로 하여 反사로의 분위기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혁신동지를 자처하는 측에서도 당의 혁신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³⁷⁾ 다양한 구성요소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표면화된 것은 사실이었다. 당내 일부의 혁신요구에 대해 근민당 선전부에서는 이를 남로당의 사주를 받은 좌파 일부의 행위로 간주했다.³⁸⁾ 그리하여 우둔한 정치부랑배들이 모당의 파괴적 책략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목살해 버렸다. 근민당은 또한 민전에 대해서도 종파성을 불식할 것을 요구했다. 민전의 종파성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민주혁명이 질식되었으므로 민전이 진실한 혁명노선에 입각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이 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처럼 근민당이 민전의 종파성을 비난하고 당내 혁신을 요구하는 세력을 남로당의 책략에 이용당한 불평분자라고 매도하자, 혁신동지회는 6월 4일 근민당은 창립부터 불순한 것이었다고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즉 발붙일 곳 없는 사로파들이 대의원증을 대량 사취하고 창립대회를 사로당대회화했으며, 당 간부들이 이들 불순한 인물에 농락당하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과오를 청산하고 대중앞에 자기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⁹⁾

혁신동지회의 움직임에 대해 呂運亨은 이에 참가한 사람중에는 당원도 있지만 비당원도 많으며 이들의 행위는 파괴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참가한 당원은 제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⁴⁰⁾ 이에 따라 근민당은 정상배적 분자들이 당내에 잠입하여 당중앙 구성에 불평을 품고 당의 악질분자와 결탁하여 혁신동지회라는 명칭으로 당을

36) 「中外新報」, 1947년 5월 30일.

37) 「大衆新報」, 1947년 6월 3일.

38) 「中外新報」, 1947년 6월 4일.

39) 「大衆新報」, 1947년 6월 5일.

40) 「中外新報」, 1947년 6월 11일.

증상하는 등, 파괴적 분파행동을 저질렀다하여 제명처분했다.⁴¹⁾

근민당은 인민당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한 계급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럴 경우 계급독재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와 농민만이 민주조선을 건설할 수 없는 것처럼 소시민만으로도 조선 건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⁴²⁾ 근민당은 노동자 농민 소시민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출발하려고 했다. 즉 이들 3계층을 포용하여 통일적 조직으로 나타난 것이 근민당이며, 이 3자의 공고한 제휴와 단결없이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민주혁명의 과업은 결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⁴³⁾ 또한 이 3자가 공동전선을 취하는 것은 과도적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보다 더 높은 과업에서도 전진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전 근로인민의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공동전선을 근민당은 인민전선이라고 파악했다. 그리고 인민전선은 單階級전선이 아니라 複階級전선이며, 이를 영도하는 것도 단계급정당으로는 안되며 복계급정당이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인민전선을 영도하는 정당은 다양한 인민의 전위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계급의 전위당이 아니라 인민의 전위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민당은 인민전선적 성격의 정당임을 강조했다.⁴⁴⁾ 이처럼 노동자 농민 소시민의 단결을 역설하고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한 근민당은 결성 전에는 약 15만명이었는데, 당 창립 후에는 당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⁴⁵⁾

41) 「中外新報」, 1947년 6월 14일.

42) 「中外新報」, 1947년 5월 25일.

43) 「中外新報」, 1947년 6월 21일.

44) 「中外新報」, 1947년 5월 21일.

45) 「中外新報」, 1947년 6월 11일.

4. 근로인민당의 선언과 강령

1) 선 언

창립대회를 마친 근민당은 선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근민당은 내외 정세를 간략하게 분석하고 5가지의 정치노선을 규정했다.⁴⁶⁾ 근민당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는 세계 근로인민의 힘과 투쟁으로 달성된 것이며 민주주의는 전세계적 규모에 있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국제독점자본과 결탁한 파쇼잔재세력이 2차대전 승리의 업적을 파괴하려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근민당은 조선에서도 반동세력이 야만적인 방법으로 근로인민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반동세력에 대한 투쟁을 집결하기 위해 민주진영의 통일과 재정비 강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선언했다.

근민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5개 부문에 대해 언급했는데, 전반적으로 과거 인민당의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근민당은 민주독립의 신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민을 토대로 한 민주정권으로서 인민공화정부 수립을 기하며, 이를 완수하기 위해 친일 파민족반역자를 배제하고 3상결정을 충실하게 실천할 것을 규정했다. 둘째 반봉건적 소유형태를 완전히 일소한 민주적 토지개혁(무상몰수 무상분배)과 아울러 계획경제를 수립하고 중요 산업의 국영을 규정했다. 셋째 대중의 낙후한 생활양식을 급속하게 향상시키고 사회적 평등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적 노동법, 남녀평등법의 제정, 신앙의 자유 보장, 봉건적 신분관계의 철폐를 규정했다, 넷째 민주건설의 발전에 적응한 인민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전통문화의 장점을 섭취 계승하고 선진 민주국의 진보적 문화를 흡수 소화하여 민주문화를 창달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근민당은 국제평화를 위해 민주국가와 우호관계를 확립하며 미·소 양국의 조선에 대한 특수한 정치적 지위를

46) 근민당의 선언 전문은 「中外新報」, 1947년 5월 28일에 수록.

이해하고 민주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이들 국가의 저명한 원조를 요망했다.

이처럼 근민당이 근로인민의 전위당임을 선언하자, 남로당측에서는 현재 노동자 농민 근로지식인의 유일당으로서는 오직 남로당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근민당이 근로인민의 전위당을 자처하는 것은 정당을 만들어 반동과 싸우는 것보다는 남로당과 싸우겠다는 의사의 표시라고 비난했다.⁴⁷⁾

이러한 비난에 대해 근민당은 남로당과 싸우려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동과 싸우며 반동에 잘못 인도되고 있는 균중을 민주진영으로 흡수하고 탐욕과 독선에 의한 공식주의를 극복하여 옳은 전통과 옳은 작풍을 세우기 위한 필연적 출발이라고 주장했다.⁴⁸⁾ 이에 덧붙여 근민당은 3당합동은 남로당이 완성한 것이 아니라 파괴한 것이며, 근민당에 대한 비난은 합당의 의의조차 모르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2) 강 령

근민당은 47년 5월 3일 행동강령 초안을 발표했는데,⁴⁹⁾ 이는 근민당이 장차 각 분야에서 취할 행동의 대강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근민당은 민주진영을 광대하게 편성함으로써 반일 반파쇼 민주역량을 총집결하여 민족의 자주적 입장에서 민주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면에서 근민당은 모스크바 3상결정을 충실히 실행할 것을 근본방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3상결정의 실행을 통해서만 밖으로는 민주주의 연합국의 공동협조를 보장할 수 있으며, 안으로는 일제의 해독을 철저히 청산하고 봉건적 유제와 반동세력을 청산하여 민주전국을

47) 「大衆新報」, 1947년 5월 18일.

48) 「中外新報」, 1947년 6월 5일.

49) 강령 초안은 「獨立新報」, 1947년 5월 3일, 4일, 6일 3회에 걸쳐 수록.

가능하게 하며 재식민지화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민당은 정치적 당면과업으로서 미소공위의 과업수행을 촉진시키며, 남북의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통일적 정책과 4개국 원조에 응할 방법을 결정해서 미소공위에 제의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 협의체는 자율적으로 임정을 구성하며 미소공위는 이에 협조해 줄 것을 요망했다.

경제면에서 근민당은 조국을 외국의 경제적 지배하에 두지 않기 위해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실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봉건적 경제조직 특히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농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공업의 발전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중요산업의 대부분이 일제의 소유였으므로 이를 국유화하여 계획적이고 능률적인 공업건설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고 당면과업으로 일본인 소유 토지, 사원, 기타 경작하지 않는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할 것을 규정했다.

교육 문화면에서 근민당은 일제의 잔재를 청소하고 민주교육체제를 확립하여 건국의 일꾼을 급속히 양성하며, 신민족문화의 창조 발전을 위해 반봉건적 유제와 반민주적 경향을 극복 배제하고 민족문화의 좋은 전통을 계발 계승할 것을 규정했다. 그리고 학자 기술자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면과업으로서 국고부담에 의한 의무교육제도의 실시와 학술연구소 창설을 규정했다. 또한 문맹퇴치 계몽운동을 전개하며 생산노동 교육제도를 완비할 것도 다짐했다.

노동 사회부문에서 근민당은 근로인민의 단결 및 자주성의 양양으로 전인민의 생활조건은 개선되고 노동자를 위한 건전한 노동조건은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제 창설 및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립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국가관리와 남녀동등권의 보장, 국비 의료기관의 보급 및 대중적 보건계몽사업의 전개, 적산주택을 국유화하여 근로인민에게 적

정 분배하고 노동자주택을 증설할 것 등을 주장했다.

외교 국방면에서 근민당은 호혜적 외교정책을 실시하며 사대주의적 외교는 배격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미·소 양국으로 하여금 3상결정의 조선 독립원조의 공약을 완전 실시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제 과업의 실천은 전 근로대중의 혁명역량의 총집결없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근민당은 광범한 인민의 민족통일전선 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모든 민주세력을 총집결해서 반민족적이며 반민주적인 반동세력과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투쟁은 당의 지도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근민당이 통일전선 결성을 주도할 것임을 밝혔다.

근민당의 이러한 강령에 대해 남로당측에서는 민주진영 전체를 분열 하자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난했다.⁵⁰⁾ 공동협의회라든지 통일전선은 이미 민주진영 총의에 의해 결성된 민전이 있으며, 민전 이외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민전을 파괴하려는 음모라는 것이다.

남로당측의 비난에 대해 근민당은 준중은 옳은 실천과 옳은 혁명노선으로 집결되는 것이지 중상이나 모략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자과의 과오를 합리화하기 위해 남로당 이외에는 모두 인민의 공적이라고 떠드는 유치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진영을 교란하고 민족의 분열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⁵¹⁾

5. 근로인민당의 정책

근민당의 제반 정책은 미소공위에 제출한 답신안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미소공위는 47년 6월 11일 공동성명 제 11호를 통해 ‘南北朝鮮 諸 民主政黨 及 社會團體와의 協議에 關한 規定’을 발표했는데, 이는 장차 수립될 임시정부의 구성과 조직 및 제반 정책에 관한 정당 사

50) 「大衆新報」, 1947년 5월 18일.

51) 「中外新報」, 1947년 6월 6일.

회단체의 자문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공동성명 11호가 발표되자 근민당은 조선 민주통일정부의 기본토대를 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전민족적으로 감사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⁵²⁾ 근민당은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 중에 외교 군사문제가 누락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으나,⁵³⁾ 공위사업의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리하여 6월 26일에는 당내 미소공위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담신안 초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등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했다.⁵⁴⁾

1) 통치구조

근민당은 민권 분야에 있어 인민은 법률 앞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전반에 있어 일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나,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모든 민족범죄자는 민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녀 계급 신분 직업 종교 지식 재산정도의 구별과 주거지 및 주거기간의 차별 없이 선거권(만 18세 이상)과 피선거권(만 22세 이상)을 향유하되, 법률에 의해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제외된다고 규정했다.⁵⁵⁾

한편 장차 수립될 임시정부의 일반적 형태에서 근민당은 政體는 민주주의 인민정권을 주장했고, 지방정권은 인민위원회 형태로 할 것을 규정했다.⁵⁶⁾ 그리고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미소공위에서 인정 받은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국호와 연호를 제정하고 여기서 임시헌장을 통과시키며 이 임시헌장에 의해 대통령 1인, 부통령 2인, 국무총리 1인, 부총리 1인과 정당수의 국무위원(35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52) 「中央新聞」, 1947년 6월 13일.

53) 「中央新聞」, 1947년 6월 18일.

54) 「中外新報」, 1947년 6월 27일.

55) 「獨立新報」, 1947년 7월 9일.

56) 「獨立新報」, 1947년 7월 9일.

최고행정관은 대통령 1인과 부통령 2인, 국무총리 1인, 부총리 1인이며 최고 정부체는 국무총리 부총리 각 행정부장 서기국장 법제국장 기타 약간인으로 구성되는 국무위원회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는 내무 외무 재무 군무 법무 문교 선전 보건 노동 광공 농림 수산 산업 체신 糧政간부 등 각 부장을 호선한다고 규정했다.

2) 제반 정책

근민당은 일제 영항의 숙청문제에 대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방면에 직면한 민주주의적 개혁 및 건설과 민족적 애국심의 선전 및 고취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정책을 마련했다. 일제의 악영향을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 근민당은 총독부시대의 각종 기구는 조직 및 명칭을 전적으로 해체하고 인민의 이익과 창안으로 이를 개체 혹은 폐지하되 민주적 애국인사를 우선 등용할 것을 규정했다. 그리고 친일분자에 대해서는 정부 기구 내에 이들의 숙청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혁명자 및 인격자를 그 구성원으로 하고 긴급정치법을 제정하여 처벌하도록 했으며, 친일분자의 범주는 일제에 의식적으로 협력하여 조선해방과 혁명세력을 방해하고 조선인민에게 해독을 끼친 자로 규정하되 해방후 민주과업에 충실한 자는 정상을 참작하여 관용한다고 주장했다.⁵⁷⁾

한편 경제력 및 정치력이 과도하게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민당은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국가 및 일본인 소유의 재산은 정부재산으로 하며, 소득에 대해 누진세를 실시하고,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며,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할 것과 해방후 관직을 이용하여 巨富를 이룬 탐관오리의 재산을 조사 적발하여 이를 몰수할 것을 규정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우선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 등 중요기관은 합의제로 하며, 중앙정부는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인민적 의사를 기초로 하되 위원회제로 조직할 것과 지방정부기관은 인민의 보통선거에

57) 「大邱時報」, 1947년 8월 10일.

의해 위원회체제로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⁵⁸⁾ 그리고 각급 기관 및 관공리에 대해서는 선출, 임면, 소환, 보고 청취, 자유 탄핵 등 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동분자 반민주주의분자 등 임시정부를 음해하려는 분자들의 행동을 방어하는 대책으로서 근민당은 토지제도에 대한 철저한 민주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 상속재산 및 소득에 대한 누진세 부과 등에 의해 이들의 물질적 기초를 없애며, 이들의 행동을 감사 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의했다.⁵⁹⁾

법률을 제정하는 기본적인 정책에 관해 근민당은 미소공위에 제시된 민주주의적 정강 정책을 기준으로 하며 동양 민족의 선량한 풍습 및 관습을 참고하고 반제 반봉건 반파쇼에 관한 정책, 친일세력 폭리자본 반역자 등의 숙청에 관한 정책, 국가계획의 인민경제 수행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사법민주화문제에 관해서는 임시정부가 민·형사 각 부문에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인민의 복리를 존중하는 법률을 제정 실시토록 하며, 일제시대의 사법관리는 전부 퇴진시키고, 인민배심제를 급속히 실시하고, 인민의 선거에 의한 사법관리제를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⁶⁰⁾

근민당은 농업부문의 발전을 위해 일제가 유지 재편성한 농업의 부분적 생산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하여 일제 소유의 모든 토지, 지주의 소작 주는 토지는 무상몰수하여 경작능력을

58) 「大邱時報」, 1947년 8월 13일.

59) 근민당은 이를 반혁명정치법이라고 하고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ㄱ. 以上 分子들의 日帝行動을 査察할 것.
- ㄴ. 政府機關潛入을 摘發 除外할 것.
- ㄷ. 以上 分子의 言論 出版 集會 結社를 監視 또는 禁止할 것.
- ㄹ. 外國의 反革命分子와의 通謀를 禁할 것.
- ㅁ. 政府陰害行爲에 對한 財政援助 禁止.
- ㅂ. 臨時政府陰害者의 外國旅行 禁止.
- ㅅ. 以上 分子의 行動處罰의 規定.

「大邱時報」, 1947년 8월 13일.

60) 「大邱時報」, 1947년 8월 13일.

가진 농민에게 무상분배하여 자작토록 하고 소작제도 일반을 철폐하여 인간 이하적인 농민의 생활 향상과 구매력 증진에 의한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과 농업 생산수단의 생산은 국영으로 하며, 산림은 원칙상 국유 국영으로 하고, 원예 및 과수재배사업에 있어 5정보 이하의 면적은 사영을 용인하도록 했으며, 축산은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본업 또는 부업적 형태로 적극 장려할 것을 규정했다.⁶¹⁾

산업부에서 중요 산업은 국영을 원칙으로 했으며, 일부 산업기관은 국가관리 하에 두면서 중소 자본의 자유로운 발전이 보장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는 당연히 생산과 분배의 계획적 조정을 요구하며, 원료 및 생산재의 배정과 소비품의 계획적 분배가 통일적으로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확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수부에서 일체의 운수기관은 국영으로 하며, 국가관리 하의 무역 어업 및 교통업을 통해 해양 항공시설을 보급하고, 육상운송의 경우 사기업의 육성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근민당은 소작제도에 관해서는 여하한 형태의 소작제도도 원칙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 이용문제에 있어 일제시대 무리하게 개담한 것을 밭으로 환원하고 경지정리를 실시하며, 전체적인 계획 하에 농작물의 종별 및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검토하여 자주적인 자급자족 농업생산체제를 수립할 것을 규정했다.

토지문제에 대해 근민당은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자유로운 수익권 사용권은 부여하되 자유처분권은 절대로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정책을 견지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부여된 토지는 매도 증여 또는 지당권 설정 등과 같은 처분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계획경제상 필요할 때 또는 경작자가 사정에 의해 경작하지 못할 경우 국가 및 농민공동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했다.⁶²⁾

61) 「大邱時報」, 1947년 8월 14일.

62) 「大邱時報」, 1947년 8월 14일.

지주의 토지를 국유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민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지주의 토지를 소작인에게 분배할 경우 지주에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상할 경우 그 금액이 천문학적 숫자로 나타나 민족 전체가 부담한다든지, 채감매상 등의 방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상 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족 전체 호수의 약 0.29%, 총 농가 호수의 약 2.7%, 총 소작농가 호수의 4.7%에 불과한 소수 지주를 위해 민족 절대 다수를 희생하고 이들 지주를 산업자본가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⁶³⁾

6. 맺 음 말

인민당의 노선을 이어받은 근민당은 해방이 국제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문제는 근본적으로 미·소 양국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해방을 위한 한민족의 기여를 간파한 것은 아니지만 연합국의 무력에 의해 일제가 타도된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한반도문제는 자연히 국제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민당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성공시켜 하루 빨리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근민당은 이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당내에 미소공위대체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소공위와의 협회에 필요한 제반 정책을 수립했던 것이다.

근민당이 마련한 정책 중에는 해방 직후 전국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었던 인민위원회를 부활시켜 이를 지방행정기관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미소공위와 협의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회의를 설치하여 여기서 임시정부의 헌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 대다수를 점하고 있던 농민층의 요구

63) 「大邱時報」, 1947년 8월 14일.

를 반영한 토지개혁의 실시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노동법령의 제정 등, 진보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 많았다. 이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제잔재의 숙청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진의했던 것이다.

근민당이 표방한 이러한 진보적인 제반 정책은 당시 일부계층에서 향유하고 있던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었기에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던 보수 진영과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당위원장인 呂運亨이 피살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위원장을 잃은 근민당은 張建相을 수석 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진보적인 정당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呂運亨이 생전에 견지했던 이념과 노선의 실현을 다짐했다.

그 일환으로 근민당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남북협상에도 참여하고 5·10선거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呂運亨의 피살로 당의 구심력이 약화되는 바람에 당세의 위축을 면하기 어려웠고, 呂運亨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노선을 추구하기 보다는 남로당으로 대표되는 극좌노선을 추종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중간계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런데다가 남·북한에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되고 그 체제가 강화되는 바람에 근민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근민당은 지지기반을 상실했으며, 49년 10월에는 당의 등록이 취소되어 해체에 봉착한 것이다.

근민당이 해체됨으로 말미암아 외세에 의존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주적인 입장에서 외세를 활용하여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呂運亨의 이념과 노선은 정착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반도문제의 외세의 존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민족주체적인 해결보다는 외세에 의한 해결만을 지향하려는 분위기가 지속되었고, 이것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져 한반도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전망을 상당기간 어렵게 했던 것이다.

〈부록〉

서울대학교附設 韓國政治研究所 研究員 名單

소	장 :	吉	昇	欽
연구위원 :	具	永	祿	
	金	世	均	
	金	榮	國	
	金	弘	宇	
	朴	贊	郁	
	安	淸	市	
	李	正	馥	
	張	達	重	
	崔		明	
	黃	秀	益	
운영위원회 :	吉	昇	欽	
	具	永	祿	
	金	榮	國	
	金	容	九	
	林	鍾	哲	
	曹	大	京	
	崔		明	
	韓	相	福	
	韓	完	相	
조	교 :	洪	泰	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부설 한국정치연구소규정

제정 1986. 12. 24. 규칙 제690호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부설 한국정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직무) 연구소는 한국정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한국 정치의 이론 및 실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정치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정리·연구·학술세미나 개최와 이를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등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제 3 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제 4 조**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두고, 연구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보조연구원은 연구원과 특별연구원을 보조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특별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

으로 학장이 임명한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사업 계획의 수립
2. 연구과제 선정
3. 연구결과의 평가
4.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6 조 (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69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